



특허청

보 도 자 료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보도 일시	2022. 4. 20.(수) 09:00	배포 일시	2022. 4. 20.(수) 08:30
담당 부서	정보고객지원국 등록과	책임자	과 장 박양길 (042-481-5232)
		담당자	사무관 나승규 (042-481-5236)

통신 장애로 등록 못한 상표권, 회복 가능할까? - 4월 20일부터 달라지는 지식재산권 권리 회복 -

상표를 출원한 'ㄱ'씨는 최근 난감한 일을 겪었다. 등록이 결정된 상표의 등록료 납부를 납부마감일 당일에 'ㄴ' 법률사무소에 맡겼는데, 예상하지 못한 인터넷 통신 장애로 등록 납부서가 제출되지 못한 것이다. 납부마감일이 며칠 지난 뒤, 납부서가 제출되지 못해 상표가 등록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ㄴ' 법률사무소는 즉시 특허청에 납부서와 사유서, 증거자료를 제출하였다.

-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을 개정하여 지식재산권 권리회복 요건을 기존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서 '정당한 사유'로 완화하여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지식재산권의 활용과 관리방법이 다양해지면서 고객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권리 회복제도가 필요해진 점을 감안하여,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 ☐ 위의 사례와 같이 본인이 아닌 대리인 측에 발생한 사건으로, 기간이 경과하여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권의 출원·등록·심사·심판 절차가 중단된 경우,
- 과거에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권리 회복이 불가능하였지만, 이제부터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될 수 있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권리 회복이 가능해진다.

□ 특허청은 지식재산권 권리 회복을 희망하는 출원인, 권리자, 대리인 등을 위해 ‘지식재산권 권리회복 심사 지침(가이드라인)’을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한다.

*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 책자/통계 > 간행물 > 지식재산 심사기준/매뉴얼

- 지침(가이드라인)은 변리업계, 지식재산 학계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고 △권리회복 신청 △권리회복 기간 및 요건 심사 △권리회복 심사 사례 등을 담고 있다.
- ‘권리회복 신청’은 출원인 등이 기간 경과 후 절차를 다시 밟고자 할 때 제출하는 기간경과이유서의 기재사항, 작성방법을 기술하고 있으며,
- ‘권리회복 심사 사례’는 권리회복 유형을 ① 천재지변 등, ② 인위적 과실, ③ 기타 사건 세 가지로 분류하고 구체적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 특허청 김기범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지식재산권 권리 회복 요건의 완화가 실질적 권리 회복에 기여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관련 학계와 변리업계 의견, 해외 최신 동향 등을 지침(가이드라인)에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현행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 추진배경

- 특허청은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을 개정하여, 권리 회복 요건을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서 '정당한 사유'로 완화함(22.4.20.시행)
 - 지식재산권의 활용 및 관리 유형이 다양해짐에 따라, 고객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권리 회복제도의 필요성 고려
- '정당한 사유'는 일반적 주의를 다하여도 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사유를 뜻하므로 개별 사례에 대한 종합적·구체적 판단이 필수적임
 - 출원인 등이 기간이 경과한 이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을 명확하게 기술할 수 있도록 기간경과이유서의 주요 기재사항을 확정하여 제공하고,
 - 신청인이 권리 회복절차와 요건을 참고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권리회복 심사 가이드라인'을 제공

< 정당한 사유 관련 판례 및 요지 >

■ 2001헌마39

[판시사항]

가.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의 의미

[판결요지]

가.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 중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이 비록 180일의 청구기간을 경과하여서 한 것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는 것이 헌법소원제도의 취지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단서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이다(헌재 1993. 7. 29. 89헌마31, 판례집 5-2, 87, 111 참조).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청구기간 도과의 원인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지연된 심판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상당한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민사소송법 제160조(불변기간)의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나 행정심판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천재, 지변, 전쟁, 사변 그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보다는 넓은 개념이라고 할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천재 기타 피할 수 없는 사정과 같은 객관적 불능의 사유와 이에 준할 수 있는 사유뿐만 아니라 일반적 주의를 다하여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사유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2. 기간경과이유서의 주요 기재사항

① 기간 경과의 원인이 된 사건

- (사건 개요) 절차 계속을 할 수 없게 된 원인이 된 사건의 내용
예) 담당자의 사망 및 사고, 내부 관리 시스템 불량 등
- (사건 발생일) 특정 사건에 의해 수수료 납부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게 된 날
- (사건 소멸일) 절차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사건이 소멸한 날
예) 대체자에 의한 절차 수행이 가능해진 날, 시스템 불량에 의한 오류사실을 인지한 날 등

② 사건 전 조치사항 및 사건을 인지한 날과 인지 후 조치

- (사건 전 조치사항) 사건 예방을 위해 출원인 등이 취한 평상시 조치사항
- (인지한 날) 권리자 및 대리인 등이 사건 발생을 안 날
- (인지 후 조치) 권리자 및 대리인 등이 해당 사건을 인지한 후 취한 조치

③ 정당한 사유가 소멸한 날

- 정당한 사유가 소멸되어 절차 수행이 가능해진 날과 그 근거

3. 권리회복 제도의 운영 및 심사방식

- (운영방식) 기간 해태로 절차 또는 권리가 소멸할 당시 당해 절차나 권리를 담당했던 부서에서 수행
 - 결론을 담당 부서 과(팀)장이 유보할 경우, 고객정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특허청장 등의 명의로 통보
- (심사방식) 권리회복 기간 심사와 권리회복 요건 심사로 구분하여 수행하고, 기간과 요건 모두를 만족해야 권리회복 인정
 - (기간) 권리회복이 권리회복 기간 내에 신청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권리회복 기간을 경과해 제출된 신청은 인정되지 않음
예) [특허료의 늦은 납부] 정당한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추가납부 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
 - (요건) 기간 해태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